##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68

발의연월일: 2020. 8. 11.

발 의 자:조경태・구자근・강대식

임이자 • 윤두현 • 조명희

전봉민 · 김승수 · 조수진

최춘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 인상 등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로 인하여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줄어들고 있지만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 현행 대출이나 또는 세금규제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들이 주택구매시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자본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천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법 시행 이후 3 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
	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제1항제
	8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
	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
	의 100분의 1천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